

# 2023년도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업무 매뉴얼

## 1 실적신고 개요

### 신고개요

- 관계법령 :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
- 신고기간 : 2024.1.8(월)~2.15(목) (법정기한 준수 必)
- 과 태 료 :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6조(과태료) 별표 4 참조
  - \* 법정기한 이내 ‘미신고’ 100만원, ‘거짓신고’ 200만원 이하 과태료
- 신 고 처 : 해외건설e정보시스템(<http://yes.icak.or.kr/>)
- 신고대상
  -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에 의해 ‘계약체결결과통보’ 된 공사 중, 2023년도에 기성이 발생했거나 잔여 기성이 남아있는 모든 해외공사
  - \* 「해외건설e정보시스템」 접속 시 대상공사 확인가능
  - ☞ 메인메뉴 ‘기성실적신고/증명서발급’ → 기성실적신고(우측하단 ‘실적신고등록’ 메뉴 확인)
- 신고방법
  - 「해외건설e정보시스템」을 통한 온라인 신고
  - 기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성이 남아있을 경우 신고 필수
  -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「구비서류 목록」의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
  - \*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, 구비서류 불필요
  - \* 구비서류 중 ‘기성 총괄표’ 는 별첨 엑셀 양식으로 작성후 첨부
- 신고통화 : 계약서에 따른 기성수금 통화 적용
  - \* (원화표기 환률) 2023.12.31자 하나은행 최종고시 환율(매매기준율)
- 관련문의
  -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/ Tel. 02-3406-1057, 1108

##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

- 관계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1호 라목  
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1호 다목  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2항 1호 다목 등
- 확인규정 :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687호)
- 확인대상 :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대상 해외건설공사  
\*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2조 참조
- 실적확인 구비서류 : 「구비서류 목록」 참조(3페이지)
-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 건은 증명서 발급 불가
- 1건 계약 공사는 1건의 주된 공종 공사로 신고하여야 하며,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여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불가
- 실적확인 및 증명발급 : 2024.1.8.(월)~4.30(화)  
\* 증명발급 일정은 시공능력평가 기관의 보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- 허위 신고시 제재
  - 기 발급된 실적의 취소 및 관련기관 행정처분 통보
  -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4에 따른 과태료 부과
  - 증빙서류 위·변조, 국가 행정업무 방해 등 신고내용에 따라 고발 조치

## 실적신고 유의사항

- 다음 각 항의 경우 실적신고 처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 제한
  - 처리기간 내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 -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기성액 산정 및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  - 내용확인을 위한 보완, 수정 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
- 실적신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자료를 위·변조한 경우 실적 취소 및 과태료 부과, 형사 고발 등 행정 조치

## 기성실적확인 구비서류 목록

구분	구비서류	확인내용
시공능력평가 미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없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없음)</li> </ul>
시공능력평가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성 총괄표 (별첨 엑셀 양식 참조)</li> <li>• 기성확인 및 기성지급 증명 (발주처 or 원도급자 확인)</li> <li>• 금융거래내역 (금융기관의 거래내역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성청구 및 확인.지급 내역 ☞ 개발형 사업의 경우 공사비 투입 내역(CPA 확인 필수)</li> <li>• 공사대금 수령내역 (금융거래내역 수령인/송금인/금액/ 일자 필수 확인)</li> </ul>
기타 보완서류  (사실관계 심의·조회시 별도 요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확인서</li> <li>• 현지지사, 법인, Project Office 등 현지 근거사업장 등록서류</li> <li>• 아국인력 파견 관련 서류</li> <li>• 계약서류(상세 시방서 포함)</li> <li>• 해외투자 승인서</li> <li>• 현지 면허 등록서류</li> <li>• 시공도면, 물량표, 사양서, 사진 등</li> <li>• 현지 세금납부 내역</li> <li>• 사업인허가 내역</li> <li>• 현장 인허가 내역</li> <li>• 기타 현장유지 및 시공내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실관계 심의 및 현지조회</li> </ul> <p>※ 기타 보완서류는 「국토부 고시 제 2018-687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」제10조에 의거 실적 확인·심의를 위해 추가 요구될 수 있는 구비서류입니다.</p>

○ 신고업무 관련 문의

-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02-3406-1057, 1108

## 2 온라인 실적신고 시스템 이용 방법

### 1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(<http://yes.icak.or.kr>) 접속

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 
ICAK e-Global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

HOME | 즐겨찾기 | 로그인 | 사이트맵 | 마이페이지 | 이용안내

해외건설업신고   해외공사상황통보   기성실적통보/증명발급   이용안내   고객센터

온라인 해외건설업무 플랫폼  
신속하고 편리한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을 이용하세요!

**해외건설업신고**

- 해외건설업 신고안내
- 현지법인신고
- 해외지사신고

**해외공사상황통보**

- 수주활동 상황통보
- 시공경과 통보
- 준공경과 통보

**기성실적통보/증명발급**

- 기성실적 통보
- 수주실적 증명발급
- 시공실적 증명발급

**협회회원사가입**

- 회원사 가입안내
- 회원사 가입

**자주찾는 메뉴 >**

- 해외건설업신고확인증 출력
- 수주활동통보
- 계약체결통보
- 시공경과통보
- 시공실적증명발급

○ 시스템 오류 문의

- 해외건설협회 정보화지원팀 02-3406-1029/1185

2 「기성실적통보/증명발급」 ⇒ 「기성실적통보 접수」 게시판 접속,  
 ‘실적신고등록’의 신고 대상공사 확인



- 「기성실적신고접수-등록」 목록은 전년도(2023년)까지 ‘계약체결결과통보’ 된 해외공사를 기준으로 기성잔액이 남아있는 모든 공사가 출력됨.
- 「기성실적신고접수-등록」 목록의 모든 공사에 대해 신고 등록이 필요
  - 기성이 발생하지 않았거나,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신고 필요 (조회된 목록의 모든 공사 신고 필요)

### 3 「실적신고등록」 기본정보 입력

- 업체명 등 사업개요의 기본정보는 기존에 보고된 ‘계약체결결과통보’ 및 ‘시공경과통보’ 등 법정신고 내용을 참고하여 자동 출력됨.
- 출력된 기본정보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‘계약변경통보’ 를 통해 내용을 변경한 후, 실적신고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함.

<b>①</b> 건설업 면허정보 (신고공사에대당하는업종선택)	구분	건설업종	면허/등록번호	면허/등록일자
	해외	선택		
	국내			

① 건설업 면허정보 : 해당공사의 업종 면허정보 선택 입력

\* 국내 건설업 등록정보 입력 시 신고공사의 해당업종 기입

<b>②</b> 시공능력평가용 실적 증명서 발급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예 <input type="radio"/> 아니오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않는 경우 '아니오' 선택	<b>③</b> 실적을 제출하여 시공 능력평가를 받는 기관	선택
계약금액	253 (천만원)	계약년월	2022/07
계약공종	용역_설계_기본설계	준공보고상태	미보고 (※ 미보고시 실적종료 불가)
발주자명	PAPUA LNG DEVELOP	원도급자	(주)
착공년월	2022/07	준공년월	2023/01

② 실적증명서 발급여부 : 시공능력평가용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유무 선택

-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시공능력평가 제도가 없는 ‘건설엔지니어링업’, ‘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’ 등은 ‘아니오’ 선택
- ‘아니오’ 선택 시, 시공능력평가용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실적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첨부 불필요

③ 제출처 : 시공능력평가 기관 선택

- 최초 선택 이후 변경 불가능, 변경사유 발생시 별도 문의
- 대한건설협회 선택 시, 세부공종(종합)을 계약공종에 맞게 선택  
ex) 계약공종이 '건축\_병원' 이라면, 세부공종(종합)은 '건축\_교육사회용\_병원' 선택

시공능력평가용 실적 증명서 발급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예 <input type="radio"/> 아니오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않는 경우 '아니오' 선택	실적을 제출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는 기관	대한건설협회
세부공종(종합)	선택		
계약금액	7,440 (천미불)	계약년월	2000/07
계약공종	토목_	준공보고상태	보고완료

-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선택시, 종합건설업 업종(종합공사의 업종을 기재) 및 세부공종(전문)을 실적신고 대상공사 수행을 위해 보유한 업종에 맞게 한 가지 선택

ex) 원도급사의 공장 건축 현장의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경우, 건설업 면허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선택후 종합건설업 업종은 건축 선택, 세부공종(전문)은 건축기계설비공사 선택

시공능력평가용 실적 증명서 발급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예 <input type="radio"/> 아니오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않는 경우 '아니오' 선택	실적을 제출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는 기관	대한전문건설협회
종합건설업종	선택 *종합공사의 업종을 기재	세부공종(전문)	선택
계약금액	7,440 (천미불)	계약년월	2000/07
계약공종	토목_	준공보고상태	보고완료

계약통화 총금액 : 미불 (주)계약체결결과보고에 명시된 계약통화정보 (아래 통화 입력시 참고용)

화폐단위	국가	화폐명	금액	환율적용일	매화환산율	고시단위	매화환산금액(미불)
SGD	싱가포르	달러	1,597,000	2000/07/06	0.8010	고시	7,030,050

※ 계약총액 및 기성액, 수령액 입력시 계약통화로 입력

계약서통화	연도계약 및 미결제공사		해당년도 기성액		해당년도 수령액	
	계약총액		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		전년도까지 누계수령액	
원화합산		0		0		0
미화합산		0		0		0
1.0		0		0		0
5	선택	0	7	0	8	0
0		0		0		0

- ⑤ 계약통화 :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성 지급통화를 선택(최초신고시만 가능)
  - 복수의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 ⑨번의 통화 추가 후 계약통화 선택



⑥⑦⑧ 계약총액 및 해당년도 기성액/해당년도 수령액

- 계약통화별로 계약총액과 해당년도 기성액, 해당년도 수령액 입력

☞ 1단위까지 입력(미화 3백만달러 = USD 3,000,000)

☞ 계약총액 : ‘계약체결결과통보’ 기준 최종 계약금액(계약통화별로 입력)

☞ 해당년도 기성액 : 2023년에 발주처로부터 확정 받은 기성액(확인일자 기준)

☞ 해당년도 수령액 : 2023년에 수령한 기성액(입금일 등 수령일자 기준)

\* 시공능력평가용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, 구비서류의 증빙자료 내용과 동 수치가 불일치 시 보완요청(반려) 또는 증명서 발급 불가

⑩ 구비서류	신고서법정서식	자동생성
	기성확인 및 기성수령증[개발형은 공사비 투입 내역(CPA 확인 필수)]	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
	금융거래내역	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
	기성확인 및 수령 총괄표(엑셀) 등 *기성실적 총괄표 양식 다운로드	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
	기타증빙내역	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

※ 파일명에 한글, 특수문자나 공백은 허용되지 않으며 100byte (영문/숫자 1자= 1byte) 이내로 변경 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

⑩ 구비서류 : 기성확인 및 기성수령증, 금융거래내역, 기성확인 및 수령 총괄표 필수 첨부

\* ‘기성확인 및 수령 총괄표’ 는 엑셀 파일로 첨부

⑪ 발주자 정보 (하도급일 경우 원도급사 정보 기재)	국내 여부	<input type="radio"/> 국내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해외	
	상호	[Redacted]	
	대표자	[Redacted]	법인번호 [Redacted]
	전화번호	[Redacted]	사업자번호 [Redacted]
	주소	[Redacted]	
	종료여부	동 공사의 기성신고는 당회를 마지막으로 종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오	
⑫ 실적신고종료	종료사유	[Redacted]	

⑪ 발주자 정보 : 발주자 정보 입력, 하도급일 경우 원도급사 정보 입력

\* 주의사항 : 국내업체 현지법인 또는 본사 구별하여 정보입력

⑫ 실적신고종료 : 기성잔액이 남아있지 않거나 수금이 완료된 경우 실적신고종료 여부 선택(준공 또는 타절 통보가 완료된 공사에 한함)

\* 주의사항 : 종료선택이 안된 경우 차회 기성실적 신고대상에 자동 포함됨.



⑬ 신고서	신고업체의 문서발송 번호	<input type="text"/>	신고업체의 문서발송 시 행일자	<input type="text"/>
⑭ 신고담당자	부서	<input type="text"/>	담당자	<input type="text"/>
	연락처	<input type="text"/>	팩스번호	<input type="text"/>
	핸드폰	<input type="text"/>	e-mail	<input type="text"/>
⑮ 비교(선택입력)	<input type="text"/>			
저장		취소		목록

- ⑬⑭ 신고정보 및 신고 담당자 : 업체 내부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, 담당자 정보 입력  
 \* 입력된 핸드폰/e-mail로 보완요청 및 처리완료 등 신고상황에 대한 알림 발송  
 ※ 신고담당자 정보가 반드시 실제 신고자와 일치하도록 입력
- ⑮ 저장 : 입력된 내용 최종 확인후 저장  
 \* 기성실적통보접수-목록 게시판으로 이동

#### 4 「기성실적통보접수-목록」 게시판의 공사리스트 등록 확인

> 기성실적통보접수 - 목록

Search    년도 2022    국가 --국가선택--    검색

공사명

신고요령    작성일순(단위 : 천만원)

번호	국가명	공사명	발주처	계약금액	공사기간	상태
1	싱가포르	공구	Land Transport Authority	217,440	2011/07 2017/10	미제출

- 실적신고 등록 화면에서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마친 공사는 ‘미제출’ 상태로 표시됨.

## 5 「미제출」 된 공사 선택 후 ‘제출’을 클릭, 인증 후 제출

> 기성실적통보접수 - 조회

미제출  
(보완요청) ▶ 제출 ▶ 처리중

수정
삭제(취하)
제출
이력
목록

**■ 사업개요**

업체명	00건설	사업자번호	104-
주소	서울특별시		
대표자명		실적년도	2022년
국가	싱가포르	도시	시
공사명(한)	공구		

- 공인인증을 거쳐 제출된 문건은 일반적인 종이 공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.

## 6 「기성실적통보접수-목록」 게시판에서 문서 상태 확인

> 기성실적통보접수 - 목록

년도 2022

국가 --국가선택--

검색

**■ 신고요령** 작성일순(단위 : 천미분)

번호	국가명	공사명	발주처	계약금액	공사기간	상태
1	싱가포르	공구	Land Transport Authority	217,440	2011/07 2017/10	<span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border-radius: 10px; padding: 2px 10px;">제출</span>

- 협회로 전송이 완료(신고)된 공사는 ‘제출’ 상태로 표시됨.
- 상태표시 예시

상태표시	내용
미제출	기본정보 입력진행 상태(내용 수정 가능) * 신고서 등 필요서류 첨부 Upload 가능
제출	실적 신고서가 협회로 제출됨
접수	실적 신고서 접수됨
처리중	서류검토가 완료되어 실적 신고서가 처리중
보완요청	실적 신고한 내용중 보완이 필요하여 반려된 상태 * '보완요청'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 필요

## 7 기성실적신고 완료 확인 및 증명서 발급

- 처리가 완료된 신고 건은 「기성실적통보 접수」 게시판에서 「기성실적통보 완료」 게시판으로 이동됨.
- 「기성실적통보 완료」 게시판의 해당공사 선택 후 ‘인쇄’ 기능을 통해 ‘기성실적증명서’ 인쇄(전자증명서 형태) 출력이 가능함.
- 출력한 ‘기성실적증명서’ 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 기관에 제출하여 실적평가액 산출에 반영할 수 있음.
- 우리 협회는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업무 종료 후, 처리 결과를 시공능력평가 기관에 통보함.